

‘위안부’문제 해결없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 제57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일본군‘위안부’문제 논의 -

신혜수 (정대협 국제협력위원장)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대협을 대표하여 본인이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여하여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을 하였다. 인권위원회에 NGO가 참여할 때는 보통 3가지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우선 인권위원회 회의에서의 공식발언, 그리고 인권위원회 참석자(국가대표 및 NGO대표들)를 대상으로 공청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로비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대협에서는 위의 3가지 활동을 병행해 왔고,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먼저 인권위원회에서의 공식발언은 <의제 12 : 여성인권 및 여성폭력>을 주제로 한 토의시간에 이루어졌다. <의제 12>는 4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다루어졌다. 한국언론에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인권위원회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올해 보고서는 다시 국가에 의한 폭력이 그 주제였다. ‘무력갈등시 국가에 의해 자행되거나 묵인되는 여성폭력’이라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E/CN.4/2001/73)는 총 34쪽 중 10쪽을 아프카니스탄부터 스리랑카에 이르기까지 13국에서의 사례에 할애하고 있다. 이중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 위안부를 위한 정의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2쪽에 걸쳐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이 요약되어있다.(동 보고서 26-27쪽, para. 92-96).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이 96년에 위안부문제에 관한 별도의 보고서를 낸 이후에 본인이 위안부 문제의 진행상황에 대한 후속보고서를 낼 것을 요구하였고, 그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그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은 위안부문제에 대해 도덕적 책임은 인정했으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원회의 특별보고관들이 제시한 권고안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 아시아여성기금의 2000년 12월 보고서에 의하면 이 기금의 수령자는 일본 수상의 사죄편지와 2백만엔의 보상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170명의 피해자가 기금을 수령했다고 한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이밖에도 2차대전과 여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과 노인을 돕기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3. 최근 여러 ‘위안부’피해자들이 일본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아직도 여러 건이 재판에 계류중이다. 판결이 내려진 사안들은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시모노세끼 법원은 1998년 위안부피해자 3명에게 30만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원고와 피고 모두가 항소하여 히로시마 고등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이다.

4.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경지법에서는 필리핀‘위안부’ 46명과 네델란드 위안부의 소송을 199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기각하였다. 필리핀 피해자들의 항소는 2000년 12월 동경고등법원에서 기각되고, 네델란드 여성의 항소는 동 법원에 계류중이다. 한국위안부여성 한명의 항소도 고통은 인정되나 국제법상으로 개인이 국가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2000년 11월 기각되었다. 일본거주 한국인의 전쟁관련 손해배상청구는 1985년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것도 법원의 주장이었다.

5. 2000년 12월 여성 그룹들은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을 개최하여 위안부제도의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상, 책임자처벌의 문제를 부각하였다. 남.북한, 필리핀, 인도네

시아, 동 티모르, 중국, 네덜란드의 위안부여성들의 증언이 국제적으로 저명한 판사들 앞에서 국제검사단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판사들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위 사항중 3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그녀는 실망의 한숨을 내쉬었다.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2003년에 끝나게 된다. 그리고 2003년의 보고서는 지금까지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한 총정리가 될 것으로, 그때 또 한번 일본군'위안부'문제가 UN의 공식문서에 기록되게 될 것이다.

인권위원회에서 의제를 토의할 때는 보통 그 문제에 대한 특별보고관등의 보고서 발표가 있는 후 먼저 위원국에게 발언권이 주어지고, 그 다음이 위원국이 아닌 옵서버 국가 및 국제기구, 그리고 NGO에게 발언순서가 주어진다. 다른 사람의 발언에 대해 이의가 있는 국가는 반박권(right of reply)을 2번까지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발언 신청자가 많아 오후 6시까지의 정규일정 만으로 다 소화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저녁 9시까지, 때로는 자정까지 회의를 연장하기도 한다.

4월 9일의 여성폭력에 관한 토의는 저녁 9시까지의 연장회의였고, 8시 반이 지나 일본과 한국, 북한이 반박권을 서로 행사하면서 공방을 주고 받은 긴장된 시간이었다. 특히 한국정부는 다자간 국제무대에서는 지난 2년간 '위안부'문제에 대해서 꿀먹은 벼어리처럼 침묵을 지켜왔었기 때문에 이날의 발언은 한국과 북한, 일본 모두에게 긴장되었고, 지켜보는 다른 정부대표나 NGO대표들에게는 한밤의 쇼처럼 피곤을 쫓게하는 이채로운 이벤트였던 셈이다.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92년 여름 정대협에서 처음 인권소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한 이래로 각국 정부 차원에서는 한국, 북한, 필리핀 등 관련국이 발언을 해 오다가, 96년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채택된 이후 공개적인 논의는 소강상태에 있었다. 필리핀은 피해자 대부분이 아시아여성기금을 받은 이후 침묵을 지켜왔고, 한국정부는 98년 김대중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간에 소위 '미래지향적 관계'를 정립하기로 합의한 이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 왔었다. 북한만이 줄기차게 공식사죄와 배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이 문제가 된 시점에서 올해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정부,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중국정부도 가세하여 오래간만에 교과서문제와 위안부문제에 관해 비판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였다.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정의용대사는 4월 9일의 발언에서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발 맞추어, 한국정부가 최근 여성부를 신설하였다는 것, 여성부의 업무중에는 여성폭력의 방지 및 철폐도 포함된다는 것, 특히 전쟁중 여성에게 자행되는 폭력의 재발문제를 지적하고, 최근의 유고전범법정의 판결이 고무적이라는 점,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전쟁중 가장 혐오스러운 여성인권침해인데 1998년 4월 한국정부는 생존피해자들에게 재정지원을 하고 한일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공동선언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일본정부가 위안부문제와 같은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젊은 세대의 역사교육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였다는 것, 그러나 최근 일본의 잘못을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축소한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위안부문제는 전면 삭제되거나 부정확하게 묘사된 점, 그리고 이러한 역사왜곡은 1988년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한일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과거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입장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 문제를 시정하고 역사왜곡의 재발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북한은 이철대사의 발언을 통해 일본을 강도높게 비난하였다. 즉 “작년 7월 오끼나와 후텐마공군기지의 미군이 14세 소녀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미군기지의 폐쇄와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대규모의 반미 시위가 있었는데, 자국의 한 소녀에 대한 폭력에는 예민하게 대응하면서 다른 나라의 여성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강요한 인도에 반한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인의 윤리는 자국여성에 대한 폭력은 굴욕으로 간주하고 타국여성에 대한 학대는 정상으로 간주한다.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도 일본과 다른 나라는 대조된다. 서유럽은 나치범죄의 희생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 배상하고 젊은이들이 생활고로 인해 네오 나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네오 나치 단체에서 탈퇴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조치등을 취하고 있기까지 하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의 범죄역사에 대한 정당화가 공개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최근 침략과 잔학의 역사를 미화한 수정된 역사교과서가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역사왜곡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과거의 패배에 대한 복수와 재침략의 심리를 일으키려는 의도적이고 교묘한 술책이며, 다른 나라를 지배, 침략하려는 불변의 야욕을 나타내며 과거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도 보여준다. 일본은 의무를 이행하기는커녕, UN안보리 상임이사국과 같은 더 큰 몫을 원하나, 그러한 나라는 UN헌장에 열거한 ‘적국’으로서의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통해 과거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원회는 여성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책임자를 가려내며 피해자에게 배상하는데 필요한 기구를 설립하기를 촉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본은 정의용대사의 발언에 대해 반박권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즉 “전쟁시 있었던 과거 행동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1995년 무라야마 총리가 말한 바대로 ‘일본은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국가의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였으며, 앞으로 그와같은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다시한번 본인의 깊은 반성과 사죄의 심정을 전하고 모든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의 심정을 전한다.’는 입장에서 변한바 없다. 그리고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정부는 깊은 반성과 사죄를 하였고, 도덕적 책임감에서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관련국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저자가 교과과정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한, 교과서에 어떤 역사적 사실을 포함시킬 것인가, 또 그 사실들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교사들을 위해 작성하며 공개된다. 따라서 정부는 교과서의 저자가 아니며 저자에게 어떤 역사적 사실을 다루라고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다양한 교과서 중에서 학교가 선택하는 것이며 선택권은 학교에 있다. 검정은 교과서검정규칙에 기초해 객관적으로 실시되었으며, 1998년 새로운 파트너쉽을 위한 한일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답변에 대해 다시 한번 한국과 북한의 반박이 있었다. 앞으로 교과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정부는 내년 제58차 인권위원회에서 다시 발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사실은 그동안 2년간 침묵을 지키지 말았어야 했다. 한일간의 새로운 동반자적 관계니 뭐니 해서 위안부 문제에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교과서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야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공색하다. 한일간의 새로운 관계는 필요한 부분에서 맺어야 하지만, 해결 안된 문제는 계속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외교적 입장일 것이다.

본인은 NGO에게 발언기회가 주어진 4월 10일 APWLD(아태 여성.법.발전포럼)의 이름으로 정대협을 대표해서 발언하였다. 즉 “지난 10년간 일본군성노예제도의 생존자들이 일본정

9.3.24
한일 x.

부의 법적 책임과 배상,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왔고, 쿠마라스와미 여성폭력특별보고관과 맥두걸 인권소위 특별보고관이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을 권고해왔으나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본정부는 최근 우익에 의해 편집된 왜곡된 중학교역사교과서를 승인하였다. 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한 8개의 교과서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침략이 아니라 아시아국가의 해방으로 묘사하고 위안부제도에 대한 기술을 삭제하고 남경대학살을 부정하는등 역사를 잘못 기술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역사와 정의에 대한 부정은 3월 29일의 히로시마 고등법원의 판결에서도 나타난다. 3명의 위안부여성에게 30만엔을 주라는 시모노세끼 법원의 판결은 기각되었다. 이런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에 대한 국가책임을 시인하지 않고 있는 일본은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 과거사를 직면하지 않고서는 일본은 정치적 지도자가 되거나 세계평화를 논할 수 없다. 위안부문제에 대한 정의를 수립하기 위해 여성운동계와 인권운동계는 12월 동경에서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을 개최하였다. 70명이 넘는 생존피해자와 1100여명의 참가자들이 남북한, 중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네덜란드의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법정 마지막 날인 12월 12일 전 유고전범법정의 회장이었던 맥도날드 판사는 히로히토가 강간과 성노예등 인도에 반한 범죄의 책임이 있으며 일본은 위안부제도의 설립과 유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있다고 판결하였다"는 등이 주 내용이었다.

공식발언 이외에 "전쟁과 무력갈등의 여성폭력"에 관한 NGO 브리핑을 4월 10일 12시-1시까지 제네바 유엔센타에서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서는 정대협에서 만든 2000년 법정 비디오클립을 상영하고 요약판결문, 2000년 법정 보고서등을 배포하였다. 이외 미얀마에서의 군인에 의한 폭력, 유고 및 르완다 전범재판에서의 문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등에 관한 패널에서 전시 여성폭력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번 인권위원회에서 위안부문제와 관련하여 캐나다에 본부를 둔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단체에서 제출한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에 관한 서면발언문이 공식문서로 배포되었다 (E/CN.4/2001/NGO/127). 이 서면발언문에서는 제안사항으로 인권위원회가 여성국제전범법정의 판결을 일본이 국가책임을 다할 수 있는 명예로운 일을 하도록 촉구하는 기회로 삼을 것과 동 법정의 판결을 인권위원회가 공식 문서로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 밖의 로비활동으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네덜란드등 관련국의 정부대표들에게 문건을 전달하고 계속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일주일도 안되는 짧은 기간동안밖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도 UN을 겨냥한 정대협의 활동은 당분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한 압박수단으로 일본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서명운동을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교과서왜곡 반대운동을 활용하여 국제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일본정부의 국가책임을 촉구하는 국제여론을 조성하고, 모아진 서명용지를 UN 사무총장과 인권위원회 위원장, 인권고등판무관등에게 전달하여 일본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제안한다.